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28

발의연월일: 2025. 5. 29.

발 의 자:김재원·민형배·박수현

박지원 • 박정현 • 정동영

김성환 • 이개호 • 김문수

김동아 · 소병훈 · 김현정

서왕진 · 조계원 · 강경숙

신장식 · 김준형 · 박은정

이해민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정기준의 불명확성, 지원방식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재생,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므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방 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 로써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4호신설 및 제48조의14부터 제48조의16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지속가능관광도시"란 관광 활동 전반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제48조의14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가.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 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 다.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
 - 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
 - 마.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 유도 및 참여 확대

제4장에 제48조의14부터 제48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4(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속가능관광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1. 에너지 절감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정도
- 2. 지역주민 참여율 및 지역경제 기여도
- 3. 관광객 1인당 환경부하지수
- 4.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여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신청 방법, 세부적 평가기준,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15(지속가능관광도시의 성과 평가 및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14에 따라 지정된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해 3년마다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14에 따라 지속가능관광도시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8조의14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이 반복된 경우
 - 4. 지정을 받은 자가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속가능관광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16(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14에 따라 지정된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지속가능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 2. 친환경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
 - 3.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 4.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 컨설팅 지원
 - 5. 성과우수 도시 인센티브 지급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48조제15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8조의15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의 취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	법률 제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4. "지속가능관광도시"란 관광
	활동 전반에 걸쳐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ㆍ
	개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제48조의14에 따라 지정을 받
	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가.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u>이용</u>
	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
	<u>스 감축</u>
	다.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
	<u> Š</u>
	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
	<u>마.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 유</u>
	도 및 참여 확대
<u><신 설></u>	제48조의14(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속가능 관광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1. 에너지 절감률, 온실가스 감 축 목표 이행 정도
- 2. 지역주민 참여율 및 지역경제 기여도
- 3. 관광객 1인당 환경부하지수
- 4. 지속가능관광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여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②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신청 방법, 세부적 평가기준,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5(지속가능관광도시의 성과 평가 및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 의14에 따라 지정된 지속가능 관광도시에 대해 3년마다 성과 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 여야 한다.

<u><신 설></u>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 조의14에 따라 지속가능관광도 시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8조의1
 4제1항제4호에 따른 지속가능
 관광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기준 점수 미달이 반복된 경우
- 4. 지정을 받은 자가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 항력적 사유로 지속가능관광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신 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16(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48조의14에 따라 지정된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있다.
 - 1. 지속가능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 2. 친환경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
 - 3.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4.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컨설팅 지원
 - 5. 성과우수 도시 인센티브 지 급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48 조제15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 문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u>5. · 6.</u> (생 략)

제77조(청문)
1. ~ 4. (생 략)
5. 제48조의15제2항에 따른 지
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의 취소
<u>6. ⋅ 7.</u>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